

창원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19나6292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창원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백경석

피고, 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길웅

변 론 종 결 2021. 6. 3.

판 결 선 고 2021. 7. 15.

제1 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 9. 18. 선고 2019가단1222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8,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는, 피고 C이 원고의 전기 기사 및 실무 책임자로 일하는 동안 배우자인 피고 B과 공모하여 원고가 2007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급받은 I공사 계량기 설치 대금 합계 158,460,000원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부당이득금 158,3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주장 사실에 관한 증거로 제출한 갑 제1 내지 10호증은 세금계산서, 매출장, 공사금액 내역서 등에 불과하여 피고들이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재정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득관, 판사 서민아, 판사 석동우